

# 경기력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07. 03.

이사회 승인 2020. 07. 30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문경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정관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경기력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·조사하고 책임지도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·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학교체육위원회와의 유기적 공조 및 협력사항
2. 교기육성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3.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양성 프로그램 연구 및 조사
4. 학생, 지도자의 체력향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
5. 선수 및 학부모와의 친화력 강화 및 안정적 지도계획 수립
6. 각종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교체육 및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인
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와 관련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학교체육 지도자의 경우 관내 학교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퇴직 또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회의소집)**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2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

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